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원적 운영,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동네의 '동'명칭이 두 개?

- 내가 살고 있는 동의 명칭은? 우리나라는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행정계층내 구역단위, 즉 '동'의 경우 법정동과 행정동 두 가지 명칭이 사용되고 있음
- 물론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과 구역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비율은 13% 정도이고 대다수의 경우 명칭이나 구역에 있어 차이를 가지고 있는 상황임

법정동과 행정동이란?

- 법정동은 토지의 소유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지번체계로서 주로 지적(토지정보) 관련 사무에 사용되고 있으며, 행정동의 경우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규모나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획정한 구역으로 각종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정책 수행의 기본단위로 사용되고 있음
- 법정동의 경우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0년대 그 원형이 만들어졌으며 해방이후에도 명칭만 바뀐 채(町→洞), 지방자치법상 동으로 자리매김해 왔지만, 인구증가 특히 도시지역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민관리 및 행정서비스 제공 편의상 기존의 법정동을 분리하거나 묶어서 '동'행정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행정동이라 명명

법정동과 행정동의 특징 비교

구분	법정동	행정동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①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④	
운영목적	권리/의무에 대한 법률적 관계시 사용 (법률적 관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쉽게 바뀌지 않는 지번체제 필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지역 단위 관리 및 주민서비스 관리구역 필요)	
형태연원	일제 강점기 도시지역의 정(町) → 해방 이후 동(洞)으로 일괄 명칭 변경 ※ 지방자치법 근거(1949 제정 자치법)	1950 중반~1960년대 서울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행정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법정)동을 2개 이상 묶거나 분리하여 (행정)동 운영 ※ 지방자치법 근거(1988 개정 자치법)	
수행사무	없음 - 지번 구성, 법정동별 공적장부 존재 - 유형적 조직/인력 없음	(법정동 관련) 관할 법정동의 장부 보관 및 관련 업무 처리 (행정동 업무) 당해 지방자치단체 동 수행업무	
법적관리주체	(폐지분합) 행정안전부장관 (명칭 및 구역 변경) 당해 지방자치단체	당해 지방자치단체	
정책활용주체	국토교통부/자치단체	행정안전부/자치단체	
활용 분야	중앙 정부	(예) 국토교통부 전체 업무	(예)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정책 업무
	자치 단체	지적, 부동산업무 등	동행정업무 주민자치회 관련 업무 등

법정동과 행정동은 어디서 사용되나?

- 법정동의 경우 지번별 토지소유관계를 토대로 만들어진 만큼, 쉽게 바뀌지 않는 안정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며, 개인은 주로 소유/권리관계 등 증명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적부서나 주택부서 등에서, 그리고 중앙부처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동 단위 정책단위로 활용됨
- 반면 행정동의 경우 행정의 주민관리와 서비스제공 편의 측면에서 설정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쉽게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탄력성을 특징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자치나 복지정책부서, 그리고 중앙부처의 경우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 등의 동 단위 정책단위로 사용됨
- 이러한 기본적인 활용 이외에도 법정동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각종 공간정보시스템의 하부행정구역단위, 환경부의 환경오염도 조사단위 등에서 사용되며, 행정동의 경우 선거구역획정의 기본단위는 물론 민간부문의 지역정보 산출의 단위로도 활용되고 있는 상황임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원적 운영, 어떤 문제를 만드는가?

정부기관간 주민생활정책과 동단위 통계기준의 상이

-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하나의 국가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이한 동단위 기준을 토대로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것임
- 예컨대 국토교통부의 경우 동단위 정책의 경우 법정동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주택정책에 있어 이른바 동단위 핀셋규제를 예로 들 수 있음),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의 주민자치나 지역복지서비스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제공됨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문제가 유발되는데,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자치행정/복지관련부서는 동단위 통계에 있어 행정동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지적관련 부서에서는 법정동을 기준으로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주민의 혼란

- A(행정)동에 인접한 B(행정)동 주민 ㄱ씨는 TV에서 A(법정)동이 주택거래 핀셋규제 대상이라는 뉴스를 보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B(행정)동은 A(행정)동과 함께 A(법정)동 구역에 포함되어 규제대상인 경우
- ㄴ씨는 중개업소에서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전입신고 등을 위해 계약서에 기재된 C(법정)동과 동일한 명칭의 동사무소(C행정동)를 방문했는데, 주소지 관할(해당 법정동을 관할 하는) 동사무소가 아니어서, C(법정)동을 관할 하는 D(행정)동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법정동-행정동의 차이에 대한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의 거의 대다수가 공인중개사라는 점은 주민혼란의 문제가 어느정도인지를 잘 보여줌) 등

법정동-행정동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는?

- 현재 법정동-행정동의 이원적 운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의 해소는 논리적으로 일치화가 대안이지만, 각각 110여년과 7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각자의 역할을 확대시켜 온 만큼, 일치화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전적 선결 과제와 보완조치의 검토가 요구됨
 - 일치화에 대한 공감대 확보(이해관계 중앙부처간 사전협의 및 공동대응 모색,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한 홍보 전략, 이해관계 법정동 지역의 반발에 대한 협력확보방안 마련 등)
 - 소요비용 산출 및 대응(통합에 따른 행정적 비용, 관련 부처의 정책적 소요비용<예: 국토부 정책/시스템 재구축 비용 등>)
 - 소유관계(지번체제)의 안정성 확보장치 마련을 위한 사전적 대비 등
- 따라서 '법정동-행정동 불일치로 인한 문제'는 이에 수반되는 '일치화 과정의 소요비용 및 보완적 과제'와 '당초 법정동과 행정동의 설치목적'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하여 향후 법정동-행정동 시스템 개편여부, 추진시기, 방법 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내용문의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oc@krila.re.kr, 033-769-9841)

지난호 일본의 과소지역 대책 입법동향과 시사점(김도형 부연구위원)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brief@krila.re.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